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01
----------	-----

2024. 10. 14.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9. 30.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13명 공동발의)

나. 상정의결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0. 14.)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이성수 의원)

- 본 안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함

3.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
- 나.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 신설 (안 제8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가. 개정 취지 및 배경

- 이 안건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고 이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가 되는 규정을 신설¹⁾하였음. 이후 2015년 해당 법을 전부개정하고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음.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기본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상공인의 정의, 법적 지위, 권리 등을 정한 「소상공인기본법」이 2020년 2월 제정되었음.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정
 -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21년 3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음.

나. 검토 내용

- 안 제2조제5호는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임을 정의하는 규정임.
-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요건을 명시한 규정이 소상공인법 제24조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입법형식상 용어의 약칭에 대한 자치법규 입안 기준은 다음과 같음.

용어를 약칭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약칭하려는 용어 그 자체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그 약칭은 용어를 정의한 후 최초로 그 용어가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하도록 함²⁾.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74호]

- 위 기준에 따르면 안 제2조제5호에 기재된 약칭 부분을 제1호에 삽입하는 것이 기준을 준수하는 방법이 되며, 그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음.

< 정의 규정 비교 1 >

현 행	개 정 안 (약칭 위치 조정 전후)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p> <p>2. 3. 4. (생략)</p> <p><신설></p>	중 복	<p>제2조(정의) _____</p> <p>_____.</p> <p>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p> <p>2. 3. 4. (현행과 같음)</p> <p>5.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p> <p>6.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란 소상공인연합회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p>
<p><신설></p>		<p>제2조(정의) _____</p> <p>_____.</p> <p>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p> <p>2. 3. 4. (현행과 같음)</p> <p>5. “소상공인연합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p> <p>6. (생략)</p>

- 그런데 2020년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소상공인 정의의 근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두는 것으로 하였음.

2) 법제처, 2022.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정의규정 약칭 유의사항, p.92~93.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정의 규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 규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이를 고려하여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한 수정의견은 6페이지 <정의 규정 비교>에 제시함.

○ **안 제2조제6호**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란 소상공인연합회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임을 정의하는 규정임.

-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소상공인법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는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음.
- 소상공인연합회 정관³⁾ 및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⁴⁾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특별시에 ‘지회’와 지역분부를 둘 수 있고, 자치구별로 ‘지부’를 둘 수 있음. 지회, 지부, 지소는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설치된 각 연합회를 구분하는 단위라고 볼 수 있음.

3)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2022. 9. 27.]

4)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개정 2024. 6. 27.]

<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산하조직으로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각 **지회**와 지역본부를 둘 수 있고, 시·군·구별로 **지부**, 읍·면·동 **지소**를 둘 수 있다.

<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광역시·도 연합회(이하“**지회**”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연합회

- 명칭 : ○○ (광역시·도) 소상공인연합회
 - 약칭 : ○○ (시·도)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지회
- (예)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 (약칭) 경기도 지회

② (생략)

③ 시·군·구 연합회(이하“**지부**”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소상공인연합회

- 명칭 : ○○(광역시·도) ○○(시·군·구) 소상공인연합회,
 - 약칭 : ○○(시)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지부
- (예)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약칭)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동작구 지부

④ 읍·면·동 연합회(이하“**지소**”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읍·면·동의 소상공인연합회

- 명칭 : ○○(광역시·도) ○○(시·군·구) ○○ (읍·면·동) 소상공인연합회
 - 약칭 : ○○(읍·면·동)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지소
- (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약칭)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신대방동 지소

⑤ **지역연합회**: 광역시·도 연합회, 특별시 연합회, 시·군·구 연합회, 읍·면·동 연합회를 **통칭**

⑥ 지역연합회장 : 광역시·도 연합회장(이하“지회장”이라 한다), 특별시 연합회장(이하“특별시 지부장”이라 한다), 시·군·구 연합회장(이하“지부장”이라 한다) , 읍·면·동 연합회(이하“지소장”이라 한다)를 통칭

- 이 조례안은 자치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자치조례이므로, 이 조례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연합회’ 이고, 그 산하조직

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연합회’에 속한 지역연합회로 한정됨.

- 위 예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연합회’의 약칭은 ‘강남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강남구 지부’이고, 지부와 지소를 포함하여 특정 지역의 소상공인연합회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지역연합회’라는 통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제 조건인 적용 범위가 강남구로 한정된 이 조례안에서 지역연합회라 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음.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 정의 규정 비교 2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_____ _____.	제2조(정의) _____ _____.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3. 4. (생략)	2. 3. 4. (현행과 같음)	2. 3. 4. (개정안과 같음)
<신설>	5. “소상공인연합회”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5.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6.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란 소상공인연합회□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	6. “지역연합회”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

주
요
변
경

※ 붉은색 빈칸은 누락으로 보임(□→와)

- 안 제8조의 조 제목 ‘소상공인 관련단체’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지원 규정 비교> 표를 참조하기 바람.

< 소상공인법 제21조제2항 >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8조제3항**은 구청장이 소상공인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같은 소상공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규정임.
- 소상공인법 제24조제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연합회는 지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임.

< 소상공인법 제24조제5항 >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 그러므로 **안 제8조제3항**에서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이라는 수식어를 포함하여 해석하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문구와 같이 ‘법 제24조제5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라는 뜻임.
- 연결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라는 문구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앞의 <정의 규정 비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지역연합회’ 라고 정의된 용어가 있으므로, 그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입법 경제성과 가독성을 갖추는 방법이라고 생각됨.

< 소상공인법 제25조제2항 >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9. (생략)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은 이미 법 제25조제2항에

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이라고 정리해두었으므로,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근거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음. 그러므로 지원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 제25조제2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이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 비교 2> 표에 수정의견을 제시함.

- 안 제8조제4항은 구청장이 소상공인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는 규정임.
 -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앞서 안 제8조제3항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함.
 - 구청장이 비용을 보조하는 경로와 비용의 범위는 이미 법 제25조의2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을 해석하면 i)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지역연합회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인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ii)비용을 전부 보조하는 것인지, 일부 보조하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음.

< 소상공인법 제25조의2제2항 >

제25조의2(보조금)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안 제8조제3항과 안 제8조제4항에 대하여 논의된 사항을 입법 형식에 부합하는 간결한 표현으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 지원 규정 비교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① ·②(생략) <신설>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①· ②(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같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하는 사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②(개정안과 같음)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p><신 설></p>	<p>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u>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u>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p>	<p>④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u>지역연합회</u>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	--	---

다. 종합 의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201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음.

○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있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요건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만큼 그 형식을 중요하게 여겨 명시하고 있음. 그러므로 조례에 정의 규정을 두려면 법률, 소상공인연합회 정관과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에 따른 정의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할 수 있다고 허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조례안에 법률에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운영 투명성 확보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 개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책임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관계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4호]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0. 14.)

- 질 의 : 소상공인 정의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기본법」에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후에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정의에 근거한 것으로 규정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답 변 : 「소상공인기본법」의 소상공인 정의가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현행 조례의 근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7. 토론 요지

- 개정 취지 및 근거 법령과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 입법 형식에 맞게 약칭을 규정하는 부분을 조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401호

발의일자 : 2024. 10. 14.

제안자 : 경제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용어를 약칭하는 경우 최초로 그 용어가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하는 입법형식에 맞춰 법 명칭 약칭을 규정하고 사용하는 부분을 조정, 수정함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맞춰 용어 및 용어의 띄어쓰기를 수정함

2. 수정내용

- 정의 조에서 각 호의 근거 법 명시 관련해 법 명칭 약칭 규정을 입법형식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하는 조문을 일부 수정함(안 제2조제1호, 제5호)
- 소상공인연합회와 지역연합회 정의를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조례 개정 취지에 맞도록 수정함(안 제2조제5호, 제6호)
- 근거 법에 사용된 용어에 맞춰 띄어쓰기 수정함(안 제8조 제목)
- 수정된 정의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제3항,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법 제24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란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역연합회”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연합회와”로 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8조의 제목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을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지역연합회”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소상공인연합회</u>”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p> <p>6. “<u>소상공인연합회 지회</u>”란 <u>소상공인연합회 그 산하조직인</u></p>	<p>제2조(정의) ----- -----.</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소상공인연합회</u>”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p> <p>6. “<u>지역연합회</u>”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u>소상공인연합회와 그</u></p>

<p>제8조(소상공인 <u>관련단체</u> 지원) ①·② (생략) <u><신설></u></p> <p><u><신설></u></p>	<p><u>지역연합회를 말한다.</u></p> <p>제8조(소상공인 <u>관련단체</u>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구청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④ <u>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u></p>	<p><u>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u></p> <p>제8조(소상공인 <u>관련 단체</u>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④ <u>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p>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5. “소상공인연합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6. “지역연합회”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

제8조의 제목“(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을“(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8조(소상공인 <u>관련단체</u> 지원)</p> <p>①·②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소상공인연합회</u>”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p> <p>6. “<u>지역연합회</u>”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u>소상공인연합회</u>와 그 산하조직인 <u>지역연합회</u>를 말한다.</p> <p>제8조(소상공인 <u>관련 단체</u> 지원)</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④ <u>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1
----------	-----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이성수·김현정·이동호·

윤석민·이호귀·손민기·

안지연·김광심·우종혁·

이도희·김영권·복진경·

노애자 의원(이상 13인)

1. 제안이유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 신설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6.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란 소상공인연합회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p> <p>①·②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u></p> <p>6. <u>“소상공인연합회 지회”란 소상공인연합회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u></p> <p>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구청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④ <u>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u></p>

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